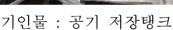
# 공기 저장탱크 파열

### 재 해 개 요

'15.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특장차 수리작업장에서 차량 브레이크 제어용 공기 저장탱크에 압축공기를 주입한 후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파열된 공기 저장탱크의 파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

## 재 해 상 황 도







재해 발생장소

### 재해발생상황

- 공기 저장탱크에 압축공기를 주입 완료한 후 그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공 기 저장탱크가 파열되면서 그 파편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
- 트레일러 제동장치 조작용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공기 저장탱크에 압 축공기를 주입하면서 공기저장 탱크가 압력시험 통과제품이 아닌 것을 발견하였으나 허용압력 등을 확인하지 않음
- 수리장에 안치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체 밸런스 조정을 위해 바퀴를 돌 리려고 했으나 바퀴가 돌아가지 않아 압축공기의 압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압축공기를 추가로 주입함

### 재해발생 원인

- 부적절한 설계 압력의 공기 저장탱크 사용
- 설계압력이 사용압력보다 낮은 공기 저장탱크를 사용함
- 과압방지조치(안전밸브) 미실시
-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 방지조치가 없었음
- 안전보호구(안전모) 미착용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파열된 저장탱크 파편에 직접 머리를 맞음

#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안전밸브 설치 등의 과압 방지조치 실시
- 과압에 따른 설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안전밸브 설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 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
- 안전모 착용
-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

## 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(안전밸브 등의 설치)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(이하 "안전밸브등"이라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압력용기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모